사전 송금방식 수입대금 확인서

1. 대금결제방식 및 대응수입예정일

☐ **사전 송금방식** : 국내 통관(물품 인수) 전 수입대금을 지급		☐ **사후 송금방식** : 국내 통관(물품 인수) 후 수입 대금 지급
대금 송금 후 물품 (선적서류)수령 예정일	☐ 1년 이내	→ 본 서식의 작성 대상이 아님
	☐ 1년 초과 ※ 한국은행 신고 사항	

사전송금방식으로 **계약 건당 미화 10만불**을 초과하는 **수입대금 지급** 후 **1년을 초과**하여 **수입물품(선적서류)을 수령**하는 경우에는 **한국은행에 신고**하여야 합니다(외국환거래규정 제5-8조). 신고방법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무역거래 형태

☐ **일반 수입** :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하는 경우	
☐ **중계무역** : 수입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	☐ 현재 수출계약 체결
	☐ 현재 수출계약 미체결
☐ **외국인수수입** : 수입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해외에서 인수하려는 경우	

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무역대금 송금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 고객명 (서명/인)

하나은행